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영림원소프트랩
□ 물 품 명 : ERP
□ 수행기간 : 2027.01.01. ~ 2027.12.31.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공급사의 물품공급.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육천칠백오십만(67,5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
조사. 공급사는 물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9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공급사 : ㈜영림원소프트랩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주)그린잇
□ 물 품 명 : 골프장 운영시스템 및 홈페이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육천칠십이만(60,720,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공급사 : (주)그린잇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주)아인톱시스템
□ 물 품 명 : Handy Groupware v8 외
메신저 및 경영정보시스템 연동 커스터마이징 개발 건 포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이천일백구십육만(21,9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공급사 : (주)아인톱시스템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타임컴즈
□ 물 품 명 : TimeCMS (공사 대표 홈페이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팔백팔십삼만(8,830,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 월 16 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공급사 : 타임컴즈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주)정원엔시스
□ 물 품 명 : **HP DL360G9, HP DL360G10, HP DL380G9, HP DL380G10, HP RX2800 i4, ZENSYS HART-FR100(GS03), HP SAN Switch, HP Data protector, HP MSA2040, HP StoreOnce 352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삼천구백삼십만(39,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공급사 : (주)정원엔시스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주)티에스원
□ 물 품 명 : **DBMS접근제어시스템(HyBoost DB-i), WBLOCK G5, Postian 웹메일 ,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Privacy-I DLP**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천칠백사십만(17,4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9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 · 공급사 : (주)티에스원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주)위즈코리아
□ 물 품 명 : **위즈블랙박스슈트(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육백삼십육만(6,360,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공급사 : (주)위즈코리아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주)아이앤아이맥스
□ 물 품 명 : S2DDS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이백구십이만팔천(2,928,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공급사 : (주)아이앤아이맥스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지란지교소프트
□ 물 품 명 : WEBFILTER V2.5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오백삼십오만이천(5,352,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공급사 : 지란지교소프트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오픈정보기술(주)
□ 물 품 명 : **JEUS Standard, WebtoB Standard**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백육십이만(1,620,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공급사 : 오픈정보기술(주)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주)데이타솔루션
□ 물 품 명 : **SSL/VPN (PSA300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칠십오만(7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20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공급사 : (주)데이타솔루션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주)데이타솔루션
□ 물 품 명 : **OS6400-P48, OS6400-P24, OS6248, OS6850E-U24X, OS6450-48, OS6560-24X4, OS6560-48X4, OS6450-24, OS6360-P24, OS6360-24**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사백삼만이천(4,032,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20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공급사 : (주)데이타솔루션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주)데이타솔루션
□ 물 품 명 : **침입차단시스템(SNIPER ONE-I 100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백이십오만(1,2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20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공급사 : (주)데이타솔루션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주)데이타솔루션
□ 물 품 명 : WeGuardia XTM4500, WeGuardia XTM2000, WeGuardia XTM1000, WeGuardia XTM500, WeGuardia XTM365X, WeGuardia XTM51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
가 협의하는 금액 육백팔십사만(6,840,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20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공급사 : (주)데이타솔루션 (인)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제조사·공급사 : (주)데이타솔루션
□ 물 품 명 : L4 PAS-K3200, WEBFRONT-K180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팔백이십이만(8,220,000)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입찰임을 감안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을 반영한 금액을 협약기준 최고금액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20일

발주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인)
제조사·공급사 : (주)데이타솔루션 (인)